

의과대학 교수업적평가 규칙

제정 2007. 2. 9
 1차 개정 2011. 2. 15
 2차 개정 2015. 5. 6
 3차 개정 2016. 10. 11
 4차 개정 2017. 7. 18
 5차 개정 2018. 7. 23
 6차 개정 2021. 11. 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의과대학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2017.7.18>

제 2 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의과대학 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 특별임용교원에 게도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6.10.11. 2017.7.18>
 ② <삭제: 2016.10.11>

[조명개정 2016.10.11]

제 3 조(평가영역 및 기준) ① 평가영역은 공통, 교육, 연구, 진료(MD 임상교원에 한함), 사회적책무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한 「교수업적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0.11., 2018.7.23., 2021.11.25.>
 ② <삭제: 2016.10.11>

[조명개정 2016.10.11]

제 4 조(평가기간) ① 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개정 2016. 10.11>
 ② <삭제: 2016.10.11>

[조신설 2016.10.11]

제 4조의 2(평가의 예외) ① 의료원장, 의과대학장,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정보혁신실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 교무부학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25.>

1. 보직 재임기간
2. 보직 퇴임년도 및 차기년도

② 평가대상 기간 중 해외연수, 연구년 또는 공인된 파견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7.23 >

제 2 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 5 조(의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수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한다)의 추천으로 의료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5, 2016.10.11>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제 6 조(평가절차) ① 평가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6.10.11>

1. 교원은 개인별 업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교실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임교수는 업적보고서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평가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주임교수의 업적은 학장이 평가하되, 임상학교실 주임교수의 진료영역은 병원장이 평가한다.
4. 학장은 주임교수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5. 학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6. 학장은 개인별 업적평가 결과를 통지한다.

② 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업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1>

제 7 조(이의 신청) ① 업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수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임교수 확인 후 학장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② 학장은 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10.11>

제 3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 8 조(평가결과 활용) 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심사, 성과급, 포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2017.7.18>

제 9 조 <삭제: 2016.10.11>

[조신설 2016.10.11]

제 9 조의 2(평가결과의 비밀유지) 평가위원회 위원과 업적평가 업무에 관계된 교직원은 평가과정에서 지득한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보 칙) 이 규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1>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이 규칙 제정공포 이전에 시행된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2007년도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